

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

(왕정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63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왕정순 의원(1명)

찬성자: 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
민병주, 박수빈, 박승진,
박칠성, 봉양순, 서상열,
송도호, 신복자, 오금란,
유정희, 이민옥, 이원형,
최기찬, 최재란, 한신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,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, 요양보호사, 청소노동자,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, 열악한 노동환경,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,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,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,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
- 또한, 고용유지장려금 지원,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, 노동권익 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계약연장 지원사업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라.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 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- 사. 관련 정책의 심의·자문을 위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고용보험법」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령 비정규직 노동자”란 60세 이상인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), 파견노동자(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) 및 그 밖의 용역·도급 노동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의 노동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고용안정 지원사업)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계약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)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증마크 수여
2.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
3.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 표창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우수기업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계속고용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)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재원 마련)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	×	[기시행 계획 활용]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7조의 노동기본 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2	제5조(고용안정 지원사업)	△	[지원규모 전제 필요]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비용 등이 발생되나 지원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추계가 곤란함
3	제6조(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)	×	[재정소요 영향 미미] 안정마크 수여 및 표창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재정소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4	제7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)	×	[기추진사업 범위내 포함] 서울시 기추진사업 ²⁾ 범위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(다만 별도 추진시 비용발생 가능)
5	제9조(위원회 설치·운영)	×	[기운영 위원회 활용]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」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5조(고용안정 지원사업)의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지원사업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등)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1) **[표창관련 재정소요 미미]**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(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)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(1인당 5,500원)정도의 소액만 소요(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)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2) **[기추진사업]** 서울시 민생노동국 <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> : 4,675,466천원

〔참고〕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고령 비정규직 계약연장 ① 지원사업과 ② 고용유지장려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려면, 우선 지원 사업의 형태를 확정하고, 서울시 예산한정성,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금액(P), 지원대상(Q)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제되어야 할 것임
 - 특히, 통상적인 고용안정 사업 특성상 단기적 정책효과가 아닌 지속적 정책을 통한 중장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므로, 일시적 재정소요가 아닌 중기적인 재정투입이 발생하는만큼 市예산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- 현재로서는 해당 규정에 의해 구현될 사업의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할 만한 정보가 제한적이며, 이에 유사사례³⁾를 통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추계분석관 손 제 승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3) [유사사례 준용가능성 검토]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에서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<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>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150,000천원(3,000천원 × 50개)이 있으나, 고용“촉진”과 “안정”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, 또한 해당사업의 지원대상(Q)이 50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구현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(추계합리성 측면에서 준용 부적합)